

본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 유·초·중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대학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지역 확산 정도에 따라 **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 지침은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22년 1학기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적용·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교 육 부

「대학방역지침(5판)」 개정 주요내용

목차	쪽수	주요항목	개정(신설·강화)																																
I. 목적 및 기본원칙	1	오미크론 정보	오미크론 변이 특성 맞춤형 정보 제공																																
	3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II.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5	PCR검사 대상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급증 시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5	등교기준 보완	방역당국 검사체계 변동에 따른 PCR 검사 대상 안내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교기준 보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방역당국 통보</th> <th>나의 접종상황</th> <th>격리기간</th> <th>검사</th> <th>등교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내가”</td> <td>확진자인 경우</td> <td>접종완료자, 미완료자</td> <td>7일 격리</td> <td>-</td> <td>등교 중지</td> </tr> <tr> <td>밀접접촉자인 경우</td> <td>접종완료자</td> <td>수동감시(7일)</td> <td rowspan="2">3일 이내 PCR,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td> <td>등교 가능</td> </tr> <tr> <td rowspan="2">나의 “동거인”</td> <td>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td> <td>미완료자</td> <td>7일 격리</td> <td>등교 중지</td> </tr> <tr> <td>밀접접촉자인 경우</td> <td>접종완료자</td> <td>수동감시(7일)</td> <td>등교 가능</td> </tr> <tr> <td></td> <td></td> <td>미완료자</td> <td>수동감시(7일)</td> <td>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td> <td>등교 가능</td> </tr> </tbody> </table>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3일 이내 PCR,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가능	나의 “동거인”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등교 가능			미완료자	수동감시(7일)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3일 이내 PCR,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가능																														
나의 “동거인”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등교 가능																															
		미완료자	수동감시(7일)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8	검사체계 변동 반영	⇒ 방역당국의 신속항원검사 중심 검사체계 변동 사항 반영																																	
IV.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10	대학 자체조사 체계 마련	방역당국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맞춰, 대학 내 접촉자 ‘대학 자체조사 및 대응’ 체계 마련 < 접촉자 조사·관리 우선순위 및 대응 수칙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우선순위</th> <th>우선순위 배정 기준</th> <th>대응 수칙</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확진자와 동일 공간 거주</td> <td>동거인 신고를 통해 보건소에서 관리토록 조치하고, 수동감시 실시</td> </tr> <tr> <td>2순위</td> <td>식사 이상 접촉력 또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15분 대화</td> <td>인지시부터 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총 3회 실시</td> </tr> <tr> <td>3순위</td> <td>동일 공간(부서)에서 근무</td> <td>인지시 및 인지후 6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총 2회 실시</td> </tr> </tbody> </table>	우선순위	우선순위 배정 기준	대응 수칙	1순위	확진자와 동일 공간 거주	동거인 신고를 통해 보건소에서 관리토록 조치하고, 수동감시 실시	2순위	식사 이상 접촉력 또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15분 대화	인지시부터 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총 3회 실시	3순위	동일 공간(부서)에서 근무	인지시 및 인지후 6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총 2회 실시																				
			우선순위	우선순위 배정 기준	대응 수칙																														
1순위	확진자와 동일 공간 거주	동거인 신고를 통해 보건소에서 관리토록 조치하고, 수동감시 실시																																	
2순위	식사 이상 접촉력 또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15분 대화	인지시부터 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총 3회 실시																																	
3순위	동일 공간(부서)에서 근무	인지시 및 인지후 6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총 2회 실시																																	
14	실험·실습실 거리두기 기준 완화	실험·실습실(예체능 실기수업 제외) 2㎡ 당 1명																																	
V. 강의실·기숙사 등 시설 관리	16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이송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신속 입소할 수 있도록 소재 지자체와 협의																																
	20	행사 인원기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299명까지																																
	20	숙박형 프로그램 기준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																																
참고	25	2. 2.19.~3.13. 거리두기 주요내용 및 주요시설 방역수칙																																	
	27	2-1. 2.19.~3.13.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 답변																																	
	42	3. 접종완료자 등의 범위 및 증명서 발급 방법 및 확인 방식																																	
	43	4. 대학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																																	
	45	4-1. 대학 내 확진자·접촉자 관리 관련 Q&A																																	
	49	5.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 안내																																	
	50	6.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안내문																																	
51	7.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목 차

I. 목적 및 기본원칙	1
1. 목적	1
2. 기본원칙	2
II.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3
1.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3
2.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 철저	4
3. 유증상자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5
4.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6
III. 평상시 대응	8
1. 등교 전	8
2. 등교 시	9
3. 등교 후	9
IV.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10
V. 강의실·기숙사 등 시설 관리	14
1. 강의실	14
2. 기숙사	15
3. 기타 교내 다중이용시설 등	18

▷ 참고 ◁

1. 「코로나19 관련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	22
2. 2.19.~3.13. 거리두기 주요내용 및 주요시설 방역수칙	25
2-1. 2.19~3.13.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답변	27
3. 접종완료자 등의 범위 및 증명서 발급 방법 및 확인 방식	42
4. 대학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	43
4-1. 대학 내 확진자·접촉자 관리 관련 Q&A	45
5.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 안내	49
6.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안내문	50
7.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51
8. 대면강의 준비 전·후 점검 사항(예시)	52
9. 교육부 자가진단 앱 설명자료	53
10. 대학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57
11. 냉난방기 사용 시 환기 수칙	59
1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60
13. 일상소독 카드뉴스	6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대학생 및 교직원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

◆ 코로나19의 특성

•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전파 경로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등으로 발생한 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
 - ※ 다만,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시술(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 삽관, 심폐 소생술, 개발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등 특정 환경에서 공기 전파 가능성 있음.

• 역학적 특성

- (잠복기) 1~14일 (평균 5~7일)
- (바이러스 검출) 증상 발생 1~3일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
 - ※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을 시사
- (무증상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에 전파가능

* 오미크론 변이 특성

- (전파력/중증도) 델타 대비 ▲전파력은 2~3배 높으나 ▲입원율 1/5(남아공)~3/4(영국), 병원 내원 확률 5/6(영국), 중증화율 1/3(남아공) 수준이나 확진자 증가로 입원환자 증가 추세
- (백신효과) 감염예방, 중증예방 등 백신효과는 델타 대비 감소
- (임상적 특성) ▲무증상이 40~50% ▲유증상자의 주요 증상은 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 등이며, 대부분 경증 ▲증상 지속기간은 평균 5.5일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1판('22.2.10.)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학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학·교직원 등의 역할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함
 - 특히, 대학에 따라 규모, 운영 방법, 자원 등 제반여건이 다르므로 대학이 지켜야할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
 - ※ 본 가이드라인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 적용 가능
 - 특히, 이번 지침은 '22학년도 신학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 및 전파력 등을 고려, 학교 내 감염요인 유입 차단 및 신속한 대처요령 등을 보완

2 기본원칙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수업 및 수업 외의 각종 활동 (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을 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
- 대면수업·활동 진행 시, 등교(출근) 전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 하지 않도록 하며, 등교 시 또는 등교 후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내 코로나19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
 -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 철저

1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이하 담당자)를 지정하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및 일상회복 방안 마련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던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으로 전환하여 운영

< (참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주요 기능 >

- ▶ (구성)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총장 또는 부총장 등), 실무담당자, 학생(반드시 포함) 등
- ▶ (기능)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방역관리, '22년 1학기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등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 변경된 방역 수칙과 기초 방역수칙을 학내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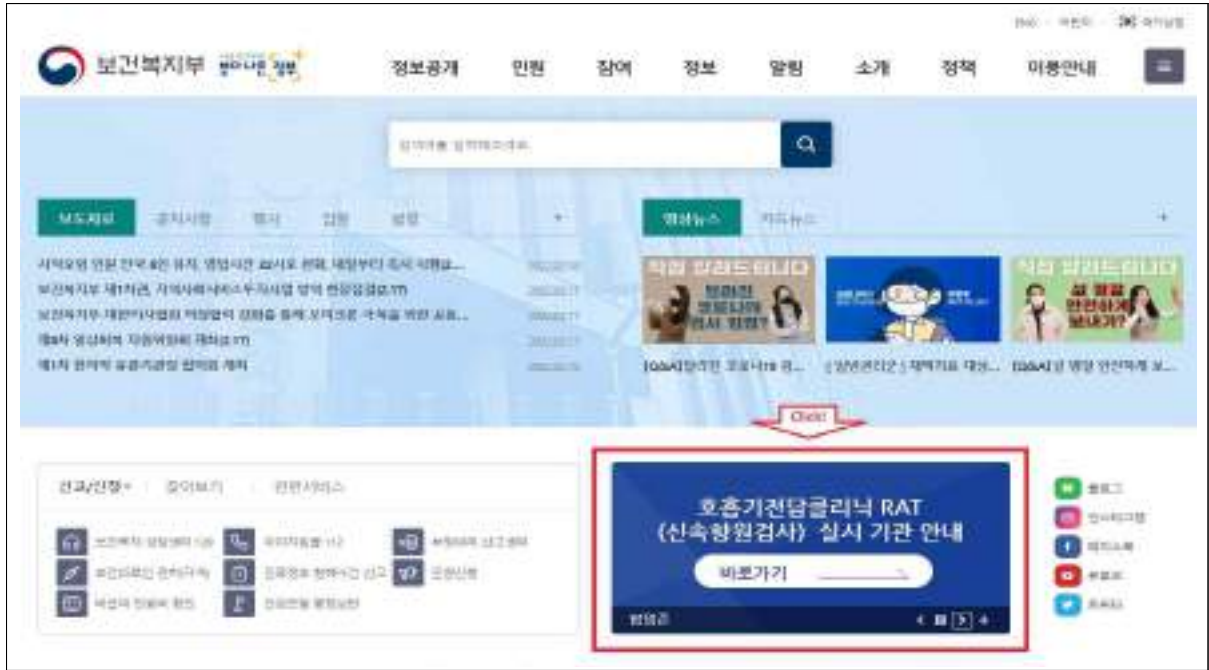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급증 시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업무 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교육부, '22.2.10.) 참고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 및 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 인근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위치 및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필요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 네이버, 다음 지도에 '신속항원검사병원' 검색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팝업 클릭



2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 철저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방역지침 변동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집중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3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 PCR 검사 대상(별도공지 시까지)

○ PCR 검사 우선순위 해당 시 (부록 38 참고)

○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④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 시,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1판('22.2.10.)

-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촉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①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②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수동감시(7일) 7일 격리	3일 이내 PCR,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가능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③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수동감시(7일) 수동감시(7일)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밀접접촉자인 경우 ^④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등교 가능	

※ (공통) 7일의 수동감시기간 또는 격리기간 후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수동감시자 권고사항)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동안은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할 것을 권고

* 해당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참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1판) 등

[상세설명]

-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③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수동 감시)
 - ※ 대학은 수동감시자 지정 후 최초 3일 간 등교중지 권고 가능
 -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④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대학은 상기 ①~④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소속 학과, 부서 담당자, 지도 교수, 복무담당자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등교(출근) 중지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

4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환기 설비를 가동

- 창문을 이용한 환기시에는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

○ 냉·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 실시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밀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참고22)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비치

○ 대학 시설 곳곳에 휴지와 덮개가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특히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이동 최소화를 위해 실내의 경우 가급적 1층에 마련하고, 실외의 경우 기상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천막 등을 활용하여 마련

□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Ⅲ

평상시 대응

1

등교 전

-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출근)를 하지 않고 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연락
 -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 ※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단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 ※ 3.1. 0시부터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하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개인적인 용도의 음성확인 소견서는 발급 가능
 - 증상이 호전된 경우 지도교수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
 - ※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키트를 이용해 검사토록 안내
- (대학) 등교(출근)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발견하여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받은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등교(출근) 중지

2 등교 시

- 대학의 상황 및 여건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대해 자가진단*과 열감지카메라, 체온계 등을 통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37.5℃ 이상의 발열자는 출입 통제 및 별도 조치 시행

*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자체 개발 어플리케이션 등 적극 활용

** (예시) 시설물 입구에서 문진표 작성 및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확인 완료 스티커(매일 변경) 등을 대상자의 팔 또는 옷에 부착하여 출입하도록 조치

< (참고) 대학 현장 자가진단 운영 사례 >

- ❖ (공공 앱)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지자체 자가진단 앱 활용
- ❖ (자체 앱) 대학 앱에 자가진단 기능을 탑재하고 자가진단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교내 출입 시 활용되는 QR코드 발급
- ❖ (기타) 수기 체크리스트 배포 후 특이사항 보고하도록 안내 등

※ 교육부 자가진단앱(학생 1인당 월 50원 이용료 발생) - 참고자료 별첨

3 등교 후

- 수업(근무) 중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키트를 이용해 검사토록 안내
 - 대학별 확보한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키트)를 기숙사, 예체능 실기·실습실, 실험·실습실 등에 우선 비치하여,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비
 - 학생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여 출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수업 결손 보완 방안 마련
-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 조교,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입실이 불가함을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좌석 간격을 조정하고 강의 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이크 덮개를 사용
- 수업 간 공강 시 가급적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

IV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 방역당국 대응 기본 방향

- 자자체(보건소)는 확진자의 가족 및 중증진행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촉자 관리하며, 방역대응역량 한계 시 학교시설은 확진자 중심으로 관리

* 6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구성원

- 보건소와 대학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대응방향 변경사항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응 방식 협의

□ 대학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 학교 자체조사 및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처벌 등을 적용하지 않음

- (접촉자 분류)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대학 내 확진자 발생 시 대학별 자체조사를 「접촉자 조사·관리 우선순위」를 활용하여 실시

< 접촉자 조사·관리 우선순위 >

우선순위	접촉자 조사 대상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와 동일 공간(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구성원
2순위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공간(부서)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 방역수칙 준수 하 회의 참석자는 3순위에서 제외

※ 대학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상기 분류기준은 대학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접촉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범위는 대학 여건에 맞게 설정

※ 1순위~3순위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

※ 참고: 사업장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 '22.2.11.)

○ (접촉자 관리) 접촉자 우선순위 분류 후 아래 수칙에 따라 대응
 < 접촉자 우선순위별 대응 수칙>

1순위 : 확진자와 동일 공간(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구성원

- ① 확진자는 별도 격리공간으로 즉시 분리
 - * 확진자가 다수일 경우, 확진자끼리 동일공간 격리는 가능
- ② 확진자가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를 동거인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보건소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
 - * 기숙사의 동일 호실 생활자는 '격리대상 접촉자'로 보건소 관리대상
- ③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조치
 - 수동감시 대상자는 진단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음성 확인 후에 수칙**을 지키며 등교(출근) 가능
 - * 확진자의 동거인 신고에 의해 보건소에서 검사대상 문자 받은 경우 PCR 검사 가능
 - ** 수동감시 생활수칙 : 감시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2순위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 15분 이상 대화 등

- ①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 유증상 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 ② 인지시부터 2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총 3회 실시
 - *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대학이 구비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 활용하며,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지체없이 유전자검사(PCR)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출근) 중지
- ③ 인지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3순위 : 동일 공간(부서)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 ①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 유증상 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 ② 인지시 및 인지후 6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총 2회 실시
 - *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대학이 구비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 활용하며,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지체없이 유전자검사(PCR)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출근) 중지
- ③ 인지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참고) 대학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예시) >

활동	담당	역할
사전준비	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방역 대응 조직 구성 및 준비사항 점검 ※ 주요 내용 : 접촉자 분류 기준 마련, 고위험 기저질환자 사전 파악 - 대학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보고	소속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발생상황 정보를 대학 내 전파 -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교내 전파 가능성 확인
	방역관리자 (코로나19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자 조사 기준, 양식 등 주요 정보를 소속학과에게 안내 - 접촉자 분류 기준 소속학과에 안내
	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총괄 관리 - 대학방역 대응 조직 운영
자체조사	소속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자체 접촉자 분류 기준에 따른 조사 실시 - 조사 결과 방역관리자에게 제출
	방역관리자 (코로나 19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자 분류에 따른 조사 결과 취합 및 재확인 - 접촉자 주의사항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조사 진행상황 점검
진단검사	소속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자 중 신속항원검사 대상에게 선별진료소·지정의원 방문 안내 또는 자가검사키트 배부, 등교기준 및 기타 주의사항 안내 - 검사 결과 확인 - 검사 결과 및 특이사항 방역관리자와 공유
	방역관리자 (코로나19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결과 관리 - 검사 결과 확진자 발생 시 교육부 보고
전파차단을 위한 별도조치 및 후속관리	총장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감염 발생 시, 대학별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라 비대면 전환 및 시설폐쇄 조치 시행 - 확진자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 이용제한(소독 등) 및 방역활동 지속 강화 - 대학방역 대응 조직 운영 결과 점검 및 개선

※ 업무분장은 총장의 권한으로 지역별, 대학별 여건에 따라 협력적 운영 필요

□ 대학 내 집단발생 시 조치사항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시설 이용제한의 구체적 범위, 폐쇄 기간,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학내 마음건강 전담조직(학생상담센터 등)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 특히 확진환자 발생 시 및 확진 학생·교직원이 학교 복귀 시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차원의 조치 마련

※ 코로나19 관련 정신·심리 지원기관: 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 타 대학 및 기관 우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거나 각 대학 여건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활용토록 권장

* 2021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성과사례집 배포('22.1.) 및 성과포럼 개최('22.2.8.)

□ 대학은 학내 감염우려 해소를 위해, 학교에 복귀하고자 하는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게 격리해제확인서* 제출 요구 가능

* 격리해제자가 요청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음성 확인서 대체 가능

- 학교 복귀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구성원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1 강의실

□ 강의실 내 감염 예방 조치

- (강의실 방역기준 완화) 21년 1학기부터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

< (현행) '21년 겨울 계절학기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

구분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실험실습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 (개정) '22년 1학기 이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

구분	방역 관리 기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 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강의실 면적 2㎡ 당 1명

- (상시 점검) 주요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마련, 강의실에 비치하여 방역관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 대면수업 시 강의실 주요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

주요 점검 사항	이행 여부
▪ 외부인 출입제한 및 수강생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책상, 손잡이, 각종 버튼 등 일상소독 실시(1일 2회 권장)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손 세정제, 마이크 덮개 비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수업 전/후 창문과 문 개방을 통한 충분한 환기 실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소독·환기

- 가급적 **1일 2회**(일과 시작 전/종료 후) 강의실을 소독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의실 내부에 손 세정제 비치
-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 ※ 환기는 창문과 문을 모두 개방하여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일 3회 이상 권고

2 기숙사

□ 기숙사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

- 대학은 기숙사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숙사 방역관리자는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관리 방안 수립
 - 해당 방역관리 방안에 의거하여 입소생 관리를 포함한 방역 및 관리활동 수행

□ 유증상자 또는 의심환자 신속 격리

-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학생 및 종사자 등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 및 관리자 교육 실시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내 격리공간 확보 및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사전 보건교육 실시
-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기숙사 입소생 중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시킨 후,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용 신속항원 키트**를 이용해 검사토록 안내

- 유전자검사(PCR)를 실시한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기숙사 1인실(화장실 및 세면실 포함) 대기 조치
-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운영 시설 정상복귀
- 유증상자 검사결과 확진환자로 확인된 경우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확진환자 이용장소(공간)는 방역조치(일시적 이용제한, 소독 등) 실시
- 기숙사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신속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소재 지자체와 협의
 - ※ 교육부, 질병청·지자체에 기숙사생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관련 협조요청('22.2.)

◆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생활치료센터 입소 관련 근거 지침

4. 생활관리

Q1.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별도(개별) 화장실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 6판 부록 4 [자주하는 질문(FAQ)]('22.2.16.)

□ 기숙사 밀집도 완화

- 1일 통학 가능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은 가급적 기숙사 배정 자제
 - ※ 해당 학생의 통학시간, 통학 시 교통수단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협의 후 결정
- 가능한 1인 1실을 운영하되, 불가피하게 2인실 이상을 운영하는 경우는 한 방의 수용 인원은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 ※ 학교 여건으로 인해 1인 1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호실 재배정 등을 통해 최대한 밀집도 완화 조치 시행
- 기숙사 출입, 공용 공간 이용 등을 위한 이동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 간, 층 간 및 호실 간 이동 제한
- 공용 공간 사용 최소화 및 거리두기 조치 시행
 - 지정된 장소 외의 공간에서 취사 및 취식(식사, 간식) 금지
 - 기숙사 내 독서실(면학실), 정보검색실 등의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거리 확보, 식사 공간 및 휴게 공간 등 칸막이 설치

□ 감염예방을 위한 기숙사 방역 강화

- 기숙사 출입구를 가급적 단일화하고, 출입 시 상시 발열체크
- 기숙사 운영 전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상태(발열 및 호흡기 질환여부 확인, 결핵검진 등)를 확인하고, 입소 후 기존·신규 이용자에 대한 건강상태 매일 확인(자가진단앱, 체크리스트 등 활용)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행동 수칙 교육 실시 및 행동수칙 관련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 취침공간 외 생활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철저, 공용 공간(화장실·샤워실 등) 이용 시 최대한 동선 겹치지 않게 하기, 기숙사 내 집단 간식섭취 금지 등
- 기숙사 내 화장실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등) 및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 덮개 있는 휴지통을 곳곳에 비치하고, 휴지통은 매일 비워 오염물질이 기숙사 내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
- 시설 내 주요 공간·물품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공간 및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물품*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공기를 정화
 - *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입소생, 종사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 입소생에 대해서는 매일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증상발현 여부 등을 점검
- 입소생들과 접촉이 잦은 기숙사 출퇴근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마련 등 관리 철저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 입소인원 외 외부인(학부모,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의 출입 금지

3 기타 교내 다중이용시설 등

- 교내 식당 등(카페, 편의점, 매점 등 취식 공간 포함)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22.3.1. 0시부터)**
 - ※ 3.1. 0시부터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하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개인적인 용도의 음성확인 소견서는 발급 가능
 - 교내 식당 이용 개시 전 식당 전체 특별소독 실시, 학생 및 교직원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식당 환기 강화
 - *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여 소독하고,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
 - ※ 청소·소독의 경우 1회 이상, 환기의 경우 3회 이상 권고
 - 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대학별, 식당별 여건에 맞게 학생 및 교직원 간 접촉 최소화 및 식사 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배식 시 위생마스크 및 일회용장갑 착용하여 오염방지
 - 식당 관리자는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마련 등 관리 철저히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출근 중단 및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 지정된 장소 외의 공간에서 취사 및 취식(식사, 간식) 금지
- 실내·실외 체육시설
 - 실내·실외 체육시설을 수업 외 사유로 이용 시, 실내·실외 체육 시설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 준수
 - (실내 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일시 중단(“22.3.1. 0시부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가능, 취식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 (실외 체육시설) **사적모임 인원기준 초과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취식 금지 등**
 -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도서관

- 열람실, 그룹토의실 등은 좌석 한 칸 띄어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운영제한 없으며, 접종 여부 관계없이 입장 가능
- 운영 중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 ※ 청소·소독의 경우 최소 일 1회 이상, 환기의 경우 일 3회 이상 실시

□ 학생자치활동

- (학생회 활동) 학생회 활동은 활동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 이상의 모임 허용
 - * (활동 기준) ①학생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적 활동을 ②대학본부 또는 단과대학에 보고 후 ③학내 공간에서 ④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 ** (예시) 22년 1학기에 학생회실 또는 강의실에서 사적모임 기준 이상으로 학생회 활동 진행할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을 경우 제외) 또는 4m² 당 1명 준수
- (동아리 활동) 대학이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하는 프로그램·행사에 동아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권장(개별 동아리활동은 사적모임 기준 준수)
- (대학 내 선거운동) 대학 본부에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후, 캠퍼스 내에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며 진행
 - ※ 구호, 노래 부르기, 율동 등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 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를 금지하며, 행사집회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
- 동아리방, 학생회관 및 각 건물 내 학생 휴게 공간 등 운영 시 반드시 충분한 환기 실시
 - ※ 청소·소독의 경우 최소 일 1회 이상, 환기의 경우 일 3회 이상 권고

□ 통학버스

-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며, 의심 증상자는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
 - 대화, 전화통화 자제 및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차량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 후 전 좌석 착석 가능(차량 정원 초과하여 탑승 금지)

* 출입문, 손잡이, 의자, 버튼 등 탑승자의 손이 닿는 부분 수시 소독 실시

○ 차량 운행 전후 차문 또는 창문 등을 개방하여 주기적 환기 실시

□ 학내 행사

◆ (참고)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행사 인원)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 (행사 정의) ①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이며, ②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③주최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④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 가능

○ (행사 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동창회·동호회·지인 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취식 제한) 모임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외적으로 가능

※ 출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중수본, '22.2.18.)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 학내 방역담당 부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후 학내에 공지

- 단,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교과+비교과) 진행 시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추가 준수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

○ 대학 내 학사 및 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원 동행 필수
※ 학사 부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

○ 취식 시 식당·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테이블 당 인원 제한 준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금지

○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기타 시설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운동부실, 고시반, 연습실(작업실) 등 시설에 대해서도 대학 자체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
 - 배달음식 공동식사로 인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마련

참고1

「코로나19 관련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

1 기본 방역 수칙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
 -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아래의 중요 수칙 메시지를 항상 명심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

【중요 수칙 메시지(변이바이러스 고려 보완)】

- (제1수칙)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KF80, KF94)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 (제2수칙)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사모임 자제하기
- (제3수칙)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 (제4수칙)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고, 신선한 공기로 수시로 환기하기
- (제5수칙)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말없이 하기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 필요

* 단, 방역수칙 위반, 격리장소 변경 명령 불이행 등 개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및 격리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2 등교 수업 시

- (등교 전) 등교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지도교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 등에 연락
 -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 ※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를 중단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 ※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 (등교 시) 학교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실에서도 띄어앉기, 칸막이 등을 통해 거리두기 시행
- (등교 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키트를 이용해 검사

3 일상 생활 시

- 기숙사 생활 시
 - 기숙사 생활 시 항상 손 씻기, 손 소독 등을 통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
 - 기숙사 내에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 간, 층 간 및 호실 간 이동은 자제하고, 특히 방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행위는 금지
 - 2인 이상이 1개의 방을 사용하는 경우 방 안에서 대화를 자제하고,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시행
 - 방 밖을 벗어나는 경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공용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은 혼잡하지 않도록 이용시간을 분산하여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공용 공간에서는 음식 섭취, 대화, 전화 등 비말 발생이 가능한 행위는 최대한 자제
 - 특히 기숙사 내 취사가 가능한 경우 취사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식사는 개별 방 또는 칸막이가 설치된 식당에서 실시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자연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매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권고
 -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기숙사 관리자에게 알리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
 - ※ 기숙사 관리자는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 독립공간 분리

□ 동아리, 종교 활동 등 소모임 행사 시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참여 자제
- 입과 코를 가리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출입 시 증상 유무(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좌석 간격 등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 식당 외 장소에서 음식 섭취는 엄격히 제한하고, 공용물품(수건, 컵 등) 사용 제한 및 개인물품 사용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2.2.18.)

< 거리두기 주요내용 (2.19.~3.13.)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22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방역패스) '22.3.1. 0시부터 잠정 중단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기타시설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 영화관·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2시 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24시까지 허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 독서실·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함성 등을 동반한 관중 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 전시회·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국제회의·학술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참고2-1

2.19.~3.13.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답변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2.2.18.)

※ 2.18. 이후 변동사항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방역담당자는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확인

1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2022년 3월 13일)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 실외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미접종자 6명을 포함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Q4.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5.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6.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2 직장 관련

Q7.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9.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0.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3 시설 이용 관련

Q11.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 영화관·공연장은 22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해당 영화, 공연 종료 시(24시 초과 금지) 까지 이용 가능 ('22.2.19~'22.3.13)

Q12.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형시설의 유형종사자는 포함

Q13.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4. 동거하는 가족 여러 명이 식당 이용 시 제한이 있나요?

- 동거하는 가족은 사적모임의 예외에 해당하나,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 가능함

Q15.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16.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모임 구성원 모두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가능(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경우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가능)

Q17.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 예시)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6인을 초과한 인원(21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필요

4 기타

Q18.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9.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0.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1.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 인원 산정 시 백신 접종 여부 구분은 없음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됨
- 영업시간 22시까지 제한(포장·배달은 가능) (2022년 2월 19일~3월 13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2

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2022년 2월 19일~2022년 3월 13일)
-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 수칙을 적용함

Q3.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는 가능
- 다만, 경기대회 내용 중 스포츠 경기 진행 외의 친목 도모, 동호회 행사 진행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Q1.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22시까지 가능(24시까지 마감)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자율적 시행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필요
- * ▲침방울이 튀는 행위(흡성, 기립, 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2.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 11.1.부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는 2021.12.1.부터 금지
- 공연장 역시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임

4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하여야 함

Q2.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 취식을 시범적으로 허용

Q3.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 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5 학원 등

Q1.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Q2. 독서실은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6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②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 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 가능하나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함
 -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5-Q1 참조)

7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 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 4㎡당 1명(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 ②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도 없음)
 - * 부스 내 상주인력, 행사진행 요원 등은 음성확인자(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또는 접종완료자 배치 권고

8 종교시설

Q1.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 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 예배(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 가능
 - * 접종 완료자만을 의미하며,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는 해당하지 않음
 -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 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선택 가능,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3.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hcv.kdca.go.kr>)에서 당일 유효한 접종일

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종교시설과 같이 이용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고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고

참고3

접종완료자 등의 범위 및 증명서 발급 방법 및 확인 방식

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3-5판, 2022.2.16.)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 증명서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접종완료 14일 이후부터 180일	1) 전자 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2)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추가접종	3) 예방접종 스티커	없음	
미접종 완치자	1) 종이 증명서 (격리해제확인서)	격리해제일 로부터 180일	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2) 전자 증명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1)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1-1) 종이 증명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1-2) 문자 통보(22.2.7.~) *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한정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1-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PCR 음성 결과통지서 2-1) 문자 통보(~22.2월말) 2-2) 종이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 2-3) 전자 증명서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 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없음	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2) 전자 증명서		
기타 건강상 이유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3-5판) 확인(p6~39)

* 3.1. 0시부터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하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개인적인 용도의 음성확인 소견서는 발급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참고4

대학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

참고: 사업장의 확진자·접촉자 관리방안('22.2.11.,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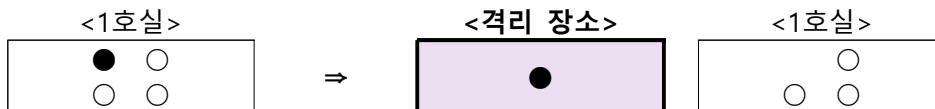
□ 대학 내 환자발생시 접촉자 관리 흐름

업무내용	업무절차
 ① 확진자 확인/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본인이 자율 보고로 확인 ○ 확진자에게 복무관리 안내 ○ 학내 확진자 발생 공지
 ② 접촉자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시설의 장 및 보건책임자 * 학교의 경우 총장 및 보건교사 또는 방역관리자 ○ (대상) 사업장 별 특성에 따라 조사대상 기준 마련 * 기숙사 등 동일 공간 생활자, 마스크 벗고 식사 및 15분 이상 대화한 자, 동일 공간(부서) 근무자 등
 ③ 접촉 명단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접촉일, 검사일 기입 ○ 보건소 요청시 접촉자 명단 제출
 ④ 자가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자 관리 우선순위에 따라 검사주기·횟수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인지 이후 2~3회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실시 ○ 음성시 업무지속, 양성시 PCR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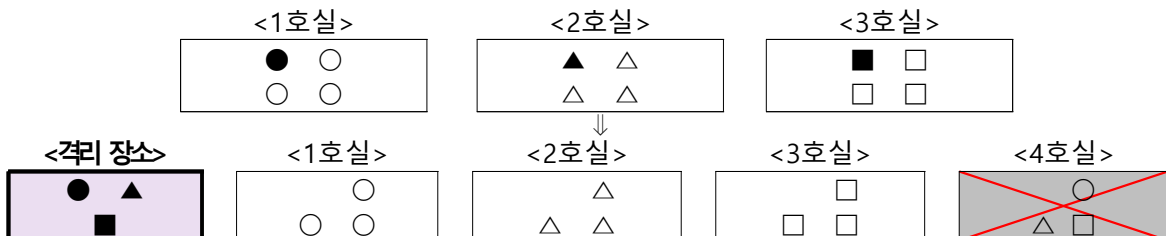
□ 기숙사에서 확진자 발생 시 관리기준 예시

- 기숙사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숙사 내에서 재택치료 시 아래 사항 준수

■ <사례1> 기숙사 내 1명 확진자 발생 → 확진자 공간 분리, 접촉자 공동 수동감시 가능



■ <사례2> 기숙사 내 다수 확진자 발생 → 확진자 공간 분리(공동격리 가능), 접촉자 공동 수동감시 가능(접촉자 간 생활공간 결합 지양)



* 표기방법 : (확진자) ●, ▲, ■, (접촉자) ○, △, □

□ 접촉자 정보 관리 방안

- 이름, 주민번호, 소속(학과, 학번), 주소(시도, 시군구, 상세주소 구분), 기숙사 거주여부, 예방접종력(1~3차 접종일) 등을 정리

기본정보									신분/학년/반				
연번	학번자번호 (질병감)	이름	국적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거주시도	거주시군구	상세주소	신분	부서	직책	학년	반
1	(예시)	홍길동	대한민국	041111-9000000		경기도	파주시		학생			1	2
2	(예시)	성준형	베트남	781225-8000000		광원도	회천군		교직원	영안과	조리사		
3													

기숙사생활	백신접종			기타 참고사항
기숙사거주 여부	1차 접종일	2차 접종일	3차 접종일	
미거주	2021-08-01			